

DDA 농업협상과 국내 농업, 농촌의 정책방향



박홍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들어가며

현재 우리 농촌의 초미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쌀 협상과 DDA 협상일 것이다. 특히나 쌀은 우리 농업과 농촌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 그 중요성은 두 말 할 나위조차 없다. 현재 쌀 협상은 미국, 중국을 비롯한 9개국과 개별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쌀협상과 관련하여 관세화 유예를 했을 경우 증가하는 의무수입물량과 관련해서 관세화가 유리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쌀 협상 자체가 관세화 유예를 하기 위한 협상이므로 협상 대표단이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얻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아울러 관세화로 갈 경우 아주 높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현재 기본 골격에 합의한 DDA 협상에서 관세감축 폭을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측면이 있다. 아울러 DDA 협상은 무역자유화를 최종 목표로 하는 WTO 협상의 연장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DDA 농업협상과 쌀 협상은 어떻게 다른가

-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DDA 농업협상과 쌀 협상은 별개의 협상이지만 쌀협상이 관세화로 될 경우 그 효과는 DDA 농업협상의 결과에 좌우될 것이다
- DDA 농업협상은 WTO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모든 농산물의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하는 규칙을 정하는 협상이나 쌀 협상은 UR 협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국의 쌀 관세화 유예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이다

■ DDA 협상의 경과

-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DDA가 출범
-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에서 기본안 합의에 실패
- 2004년 3월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 2004년 7월말까지 기본골격(framework) 타결목표 설정

- WTO 일반이사회 오시마(Oshima) 의장 및 수파차이(Supachai) 사무총장은 그 동안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2004년 7.16일 기본골격(framework) 초안을 발표
- 오시마 의장 초안은 7.19일부터 회원국과 그룹의 의견청취와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7.31일 일반이사회에서 채택

■ DDA 협상의 주요 내용

이번에 채택된 기본안(framework)은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완전한 세부원칙(Modality)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체적인 세부원칙 협상이 진행되므로 더욱 더 협상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31일 합의된 기본안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접근 분야

- 관세수준에 따라 구간을 정하여 고율 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조화방식을 채택하였으나, 각국이 선정하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부여하여 관세감축과 의무수입물량(TRQ) 증량을 연계하여 실질적 시장접근을 제공하도록 허용
 - 감축기준세율 : 양허관세
- 개도국에 대해서는 관세감축 공식 · 민감품목의 수와 대우 · 이행기간에 있어 우대를 분명히 규정하였으며, 특히, 개도국이 지정하는 일정 수의 특별품목(Special Product)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특별품목 : 적절한 수(an appropriate number)의 대상품목을 각국이 선정하여 제시
- 개도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제도(SSM) 설정

- 민감품목은 실패품목(each product)별로 TRQ 증량과 관세감축의 조화를 통해 시장접근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TRQ 확대는 관세감축 공식에서 편차(deviations)를 고려하여 추후 협의될 기준과 규칙에 따라 결정
- 관세상한을 추후 평가과제로 명기하고 있으며 관세감축 구간의 수와 경계 · 각 구간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관세감축 방식 · 개도국 SP품목의 기준과 구체적인 처리방안 등 많은 쟁점 사항은 추후 협상

2) 국내보조

- 감축대상보조(AMS)에 대해 감축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AMS와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그리고 블루박스를 합산한 무역왜곡보조 총액에 대해서도 감축의무를 부과하되, 보조수준이 높은 국가가 더 많이 감축
- 이행 초년도와 후속 이행기간동안 무역왜곡보조 총액은 80% 수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함
- 품목특정적 보조(product-specific AMSs)에 대한 상한개념 도입
- 생산제한시책을 전제로 하지 않는 블루박스를 새로 도입하고, 블루박스 보조금 지급한도를 농업총생산액의 5%로 규정하고 과거에 사용실적이 없는 국가도 블루박스 도입근거를 마련(블루박스의 기준은 추후협상)
-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감축은 개도국 우대원칙을 고려하고, 대부분의 최소허용보조를 영세소농을 위하여 배정하고 있는 개도국은 감축의무를 면제
- 허용보조는 생산이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도록 요건을 재검토 및 명확화하고 NTC의 적절한 반영

3) 수출경쟁 분야

- 수출보조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시한까지 철폐하고, 수출신용·국영무역·식량원조 등이 수출보조 우회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규율을 강화
- 개도국에만 허용되는 물류비 지원 등 수출보조(농업협정 제9.4조)는 유지

※ 철폐의무 : 합의시점까지 아래의 수출보조 철폐

- 양허된 수출보조와 180일 이상의 상환기간을 가진 수출신용, 최소이자율, 위험프리미엄 등에 대한 규율에 어긋나는 수출신용(180일 이내의 수출신용 등을 규율하기 위한 조건을 추후 합의)
- 정부의 재정지원과 손실보전 등 수출국영무역의 무역왜곡적 관행
- 잉여농산물 처분 등 향후 마련될 규율에 부합하지 않는 식량원조

4) 개도국우대

- 긴 이행기간 부여
- 개도국우대 수출보조 유지(농업협정 제9.4조)
 - 모든 종류의 수출보조 철폐이후 협상되는 적정 한 기간동안 존치
- 국내소비자 가격안정과 식량안보 확보에 관련되는 개도국의 STEs(수출국영무역기업)는 독점적 지위유지를 위한 특별한 배려

■ DDA 협상의 향후 전망과 농정방향

농업분야에서 타결된 DDA 농업협상의 기본골격(framework)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내용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 수치를 포함한 세부 쟁점은 추후 협상에서 결정하도록 미루고 있어, 향후 협상을 통해 수립해야 하는 세부원칙(Modality)에 따라 최종협상결과가 정해질 것이다. 향후 협상시한과 관련해서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정해진 2004년 12월말까지의 협상시한을 넘겨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제6차 WTO 각료회의를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향후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역점을 쏠아야 할 점은 주요 관심사항인 민감품목 및 SP품목의 범위 확대와 처리방법에 대한 신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관세상한 설정의 배제, TRQ 증량 최소화 등이다.

이번에 어렵사리 합의한 기본 골격안은 수출국과 수입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147개 회원국을 포함한 WTO체제하 다자간 협상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이대로 가다가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붕괴될 지도 모른다는 각국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의견도 있다.

이번에 타결된 농업부문의 세부원칙 기본골격 중 우리에게 불리한 점은 시장접근분야에서 ▶ 관세감축대상품목을 여러 구간으로 구분하고 높은 관세는 더 많이 감축하는 점, 우리와 일본이 적극 반대해온 ▶ 관세상한제 도입문제 ▶ 품목별 AMS상한을 설정하고 품목간 전용을 제한하며, 협상결과 이행초년도부터 ▶

무역왜곡보조 총액이 기준연도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점 등이다.

반면에 각국이 ▶ 적절한 수의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관세설정에 있어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이나 ▶ 개도국에 대해 우대를 하겠다는 점 ▶ 허용대상인 생산제한 직접지불(Blue Box)에서 생산제한을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제도 도입을 허용하고 우리와 같이 ▶ 기존의 사용실적이 없던 나라도 농업 총생산액의 5% 범위안에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협상내용이라고 하겠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지나친 낙담이나 절망이 아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다고 보고 향후 협상과정에서 그나마 우리에게 유리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렇게 되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협상에서 최대한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선진개도국이니 최빈개도국이니 하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점이 우리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협상은 협상대로 최대한 유리한 협상이 되도록 하는 일이 대외적으로 할 일이라면 대내적으로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정책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준비하는 일이다. 지금 정부에서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19조 투융자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이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쌀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를 줄여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쌀농가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뚜렷한 대책이 없어보인다. 각종 직불제를 강화하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선진국 수준까지 가는 길은 요원해 보인다. 미국 농업예산의 직불제 비중 36%, 유럽의 70%와 우리의 8%는 현재 우리농업의 주소를 보여준다.

그리고 각종 농업환경을 개선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농촌의 교육, 의료, 문화부분을 개선하고 농업물류비를 절감하는 일은 농업소득을 보장하는 일 만큼 중요하다. 우리의 농촌과 농업은 어느 한 가지로 풀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업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우리의 농업농촌기본법과 유사한 일본 식료 농업농촌기본법 7조에는 국가의 책무라고 해서 '국가는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기본이념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농업농촌기본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고 기본법이라고 부르기에 모자란 부분이 많다. 다행히 이러한 부분에 공감을 하는 의원들과 국내 학자들과 더불어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바로 이러한 일 하나 하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불신을 받아온 농정이 농민들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받는 정책, 이것이 바로 우리의 농업과 농촌정책의 쉽지만 결코 쉽지 않은 농정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㉟